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6602 제출연월일: 2024. 12. 17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운영하고 있는 '신기술·신제품 인증 제도'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 및 해당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서, 이는 특정 제품 등의 품질, 규격, 성능 등에 대한 표준이나 기술 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를 심사·평가하는 본래적인 인증제도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신기술·신제품의 '인증' 제도를 '지정' 제도로 변경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2의 제목 "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)"을 "(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신기술 인증"을 "신기술 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인증된 신기술(이하 "인증신기술"이라 한다)"을 "지정된 신기술(이하 "지정신기술"이라 한다)"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"을 "신기술의 지정및 지정 유효기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
제16조의 제목 "(신제품의 인증)"을 "(신제품의 지정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신제품 인증"을 "신제품 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"을 "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"인증"을 각각 "지정"으로 한다.

제16조의2의 제목 "(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)"을 "(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신기술 인증"을 "신기술 지정"으로, "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"을 "신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"으로 한다.

제16조의3의 제목 "(인증표시)"를 "(지정표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인증된 신제품(이하 "인증신제품"이라 한다)"을 "지정된 신제품(이하 "지정신제품"이라 한다)"으로, "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"으로 한다.

제16조의4의 제목 "(인증의 사후관리)"를 "(지정의 사후관리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"으로, "신제품 인증"을 "신제품 지정"으로 한다.

제16조의5의 제목 "(인증의 취소)"를 "(지정의 취소)"로 하고, 같은 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"으로, "인증을"을 "지정을"로 하며, 같은 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제1호 중 "인증을"을 각각 "지정을"로 하다.

제17조의 제목 "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)"을 "(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신기술 인증"을 "신기술 지정"으로, "신제품 인증"을 "신제품 지정"으로, "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제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중 "인증신제품"을 각각 "지정신제품"으로 한다.

제1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중 "인증신제품"을 각각 "지정신제품"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"(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)"를 "(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)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제품"으로 한다.

제43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"신기술 인증"을 각각 "신기술 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"신제품 인증"을 각각 "신제품 지정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제1호 중 "신기술 인증"을 "신기술 지정"으로, "신제품 인증"을 "신제품 지정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"을 "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기술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제4항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 한 것으로 본다.

- 제3조(신제품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인증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.
 -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제품의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.
- 제4조(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경과조치)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·신제품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기술·신제품 지정 또는 지정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.
- 제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다목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
②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9조제1항 중 "인증"을 "지정"으로 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2(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	제15조의2(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
적용제품 확인) ① 산업통상자	<u> 적용제품 확인)</u> ①
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	
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	
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	
기술을 신기술로 <u>인증</u> 할 수 있	<u>지정</u>
다.	
② 제1항에 따른 <u>신기술 인증</u> 은	② <u>신기술 지정</u>
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, 필요	
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	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	③
항에 따라 <u>인증된 신기술(이하</u>	<u>지정된 신기술(이하</u>
<u>"인증신기술"이라 한다)</u> 을 실증	"지정신기술"이라 한다)
적으로 구현 가능하게 적용한	
제품을 신기술적용제품(이하	
"신기술적용제품"이라 한다)으	
로 확인할 수 있다.	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	4
에 따라 <u>신기술의 인증 및 인증</u>	신기술의 지정 및 지정
<u>유효기간</u> 의 연장 또는 신기술적	유효기간
용제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	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	
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	
하여야 한다.	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
에 따른 <u>인증</u> ·확인의 기준·대
상·절차 및 <u>인증</u> 의 유효기간
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
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신제품의 인증) ① 산업통 지상자원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대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·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·기술적 파급효과가 큰제품을 신제품으로 인증할 수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<u>신제품 인증</u>은 유효기간을 정하여 하되, 필요 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<u>신제</u>품의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에 따른 인증의 기준·대상·절

⑤ <u>지정</u>
 제16조 <u>(신제품의 지정)</u> ①
(2) 전세요 시청
 ④ 지정

차 및 <u>인증</u>의 유효기간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.

제16조의2(인증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) ① 제15조의2에 따른 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적용제품 의 확인 또는 제16조에 따른 신 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 장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- 제16조의3(인증표시) ① 제15조의 2제3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신기술적용제품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신제품(이하"인증신제품"이라 한다)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및 홍보물 등에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임을 표시할 수있다.
 - ② <u>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</u> 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나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제1

<u>지정</u>
제16조의2(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
이의신청) ①
신기술 지정
<u>신</u>
제품 지정 및 지정 유효기간
<u>.</u>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3(지정표시) ①
<u>지정된 신제품(이하</u>
"지정신제품"이라 한다)
지정신기술 또
는 지정신제품
②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

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(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제16조의4(인증의 사후관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<u>인증신</u> 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신기술 또는 <u>신제품 인증</u>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. ② (생략)
- 제16조의5(인증의 취소) ①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은 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.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<u>인증을</u> 받은 경우
 - 2. · 3. (생략)
 - ② (생략)

제17조<u>(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</u> 에 대한 지원) ① 정부는 제15

<u>.</u>
제16조의4(지정의 사후관리) ①
<u>지정신</u>
기술 또는 지정신제품
신제품 지정
② (현행과 같음)
제16조의5(지정의 취소) ①
지정신기술
또는 지정신제품
지정을
<u> </u>
지정을
<u> </u>
1
<u>지정을</u>
<u> </u>
2. · 3. (현행과 끝름) ② (현행과 같음)
제17조(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
<u>에 대한 지원)</u> ①

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제 품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새 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 지원과 인증신제품 및 신 기술적용제품의 우선구매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 관(이하 "공공기관"이라 한다) 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 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 의 구매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 다만, 인증신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가능하 거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제17조의2(공공구매책임자의 지 제 정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은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 고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이 추천한 인증신제품 관련 업

<u>신기술 지정</u>
<u>신제</u>
품 지정
지정신제품
②
<u>지정신제</u>
<u>五</u>
<u>지정신제품</u>
<u>지정신</u>
제품
· 』17조의2(공공구매책임자의 지
정 등) ①
<u>지정신제품</u>
<u>지정신제품</u>

무담당자 등을 공공구매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구 매책임자는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 인증신제품 구매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 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 하여 인증신제품 구매비율이 제 17조제2항에서 정한 비율 이하 인 경우 등 인증신제품 구매계 획 및 구매실적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이 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④ ~ ⑥ (생 략)
-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 기관의 <u>인증신제품</u> 구매실적 등 을 평가하여 공공구매 우수기관 및 공공구매 유공자에 대한 포 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 다.
- ⑧ 제17조제2항에 따라 <u>인증신</u><u>제품</u>을 구매한 공공구매책임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

2
<u></u>
<u>정신제품</u>
③
<u>지정신제품</u>
<u>지정신제품</u>
④ ~ ⑥ (현행과 같음)
7
<u>지정신제품</u>
⑧ <u>지정신</u>
<u>제품</u>

명되지 아니하면 <u>인증신제품</u>의 구매로 인하여 발생한 공공기관 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- ⑨ 공공구매책임자의 임무 및 요건,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등의 제출, 구매적정성 검토 및 조치, 권고이행 여부에 대한 공고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인증신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인증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신제품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는 사업(이하 "품질보장사업"이라 한다)을 실시할 수있다.
 - 1. 2. (생략)
 - ②・③ (생략)
- 제43조의2(수수료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 업통상자원부렁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 다 만,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 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

	<u>지정신제품</u>
	<u>.</u>
	9
	지정신
	제품
	<u></u>
.1	
제	18조(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
	의 실시) ①
	<u>지정신제품</u>
	1.・2. (현행과 같음)
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	43조의2(수수료)
	•

탁기관에 내야 한다.	
1.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<u>신기</u>	1 신기
<u>술 인증</u> 을 신청하는 자	<u>술 지정</u>
2.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<u>신기</u>	2 <u>신기</u>
<u>술 인증</u> 유효기간의 연장을	술 지정
신청하는 자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4. 제16조제1항에 따른 <u>신제품</u>	4 신제품
<u>인증</u> 을 신청하는 자	<u> 지정</u>
5. 제16조제2항에 따른 <u>신제품</u>	5 신제품
<u>인증</u>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	<u> 지정</u>
하는 자	
세47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47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	
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	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	1
법으로 제15조의2제1항에 따	
른 <u>신기술 인증</u> 이나 같은 조	<u>신기술 지정</u>
제2항에 따른 신기술적용제품	
의 확인 또는 제16조제1항에	
따른 <u>신제품 인증</u> 을 받은 자	<u>신제품 지정</u>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제1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	2

인증신기술 또는 인증신제품의 지정신기술 또는 지정신제품--

표시 또는 홍보를 한 자는 500
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	<u>.</u>
-----------------	----------